# 공 고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61호**

2024년도 제3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수의사법」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2024년도 제3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 1. 응시자격

「수의사법」 제16조의2 또는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가. 「수의사법」 제16조의2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 입학 당시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2021.8.28. 기준)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②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이와 동등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③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 2. 시험 일정 등

가. 시험 시행 일시 : 2024.2.25.(일) 10:00 ~ 13:50

○ 응시자는 시험시행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 개별 좌석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 이후, 1주일 이내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www.vt-exam.or.kr)에 공지하고, 당일 시험장 출입구 등에 안내 예정

나. 시험 과목, 시험 교과목 및 문제수

| 시험과목 | 시험 교과목 | 문제수 |
|---|---|---|
| 기초 동물보건학 | 동물해부생리학, 동물질병학, 동물공중보건학, 반려동물학, 동물보건영양학, 동물보건행동학 | 60 |
| 예방 동물보건학 | 동물보건응급간호학, 동물병원실무, 의약품관리학, 동물보건영상학, | 60 |
| 임상 동물보건학 | 동물보건내과학, 동물보건외과학, 동물보건임상병리학 | 60 |
|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 20 |

다. 시험시간표

| 교시 | 시험과목(문제수) | 시험시간 | 비고 |
|---|---|---|---|
| 1 | 기초 동물보건학(60개), 예방 동물보건학(60개) | 10:00~12:00 | 120분 |
| 2 | 임상 동물보건학(60개),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20개) | 12:30~13:50 | 80분 |

* 배점 : 문제당 1점

## 3. 시험 시행 장소

가. 킨텍스(KINTEX) 제2전시장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0

○ 교통편

① 지하철 : 3호선 대화역(도보 7분, 대화역 2번 출구 버스정류장 058번, 대화역 5번 출구 버스정류장 039, 082, 089번)

② 버스(출발지 기준) : 서울역·광화문·신촌 - 1000, 2000, M7106, 9714, 9708, 9701, 1100 / 영등포 - 9707, 1500 / 김포공항 - 150, 56 / 일산지역 - 55, 55-2, 97, 200, 600, 900, 056

③ 광역버스(출발지 기준) : 강남 - 9700 / 분당·성남 - 8109 / 안양 8407 / 대화역 - 058, 039, 082

④ 공항리무진(출발지 기준) : 인천공항 - 7400 / 김포공항 - 7300

⑤ KTX(출발지 기준) : 서울역 3번 출구 - 1000, 2000, M7106 / 행신역 - 97

* 교통편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시험방법

○ 필기시험(객관식 5지 선다형)

##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1.15.(월) 9:00 ~ 2024.1.19.(금) 18:00

나. 접수방법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www.vt-exam.or.kr)

○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 가입 → 메인 화면의 상단 메뉴에서 '원서접수' → 제3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 시험안내 및 동의 메뉴에서 '원서접수 유의사항'과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 → 개인정보 확인(증명사진 업로드, 주소 입력 등) → 시험장소 확인 → 전자수입인지 구매 결제 → 확인 → 접수완료 확인 → 응시표 출력

* 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수수료 : 2만원(전자수입인지 - 행정수수료 용)

라. 작성 서류(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

○ 응시원서(첨부 서식 참조)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마. 응시표 교부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후, 출력하여 사용

## 6.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가.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 각 과목당 시험점수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필기시험 합격자로 함

나. 발표 예정일 : 2024.3.4.(월)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www.vt-exam.or.kr) → 로그인 → '필기시험 합격자 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

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 결과 결격사유가 있거나, 「수의사법」 제16조의2 또는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자격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을 무효로 함

## 7. 자격인정

가. 적용 대상 : 2024년도 제3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나. 제출 기간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포함)

다. 제출 방법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www.vt-exam.or.kr)

○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메인 화면의 메뉴에서 '나의 시험정보' → 관련 서류 업로드

라. 자격인정을 위한 제출서류

○ 공통 서류

- 「수의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 「수의사법」 제5조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 사진(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하며, 이하 같다) 2장(다만,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한 증명사진으로 대체 가능)

○ 개별 서류

- 「수의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해당자 : 평가인증 받은 양성기관의 졸업증명서

* 「수의사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제16조의2제1항제1호 해당자 : 평가인증 받은 양성기관의 입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수의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 해당자 : ① 평가인증 받은 양성기관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② 동물병원 종사증명서(동물간호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 ③「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확인서
- 「수의사법」 제16조의2제1항제3호 해당자 : ①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증이나 자격증, ②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 인정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에서 발행된 증명 서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경우에 한함) 또는 현지의 한국 주재공관장(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공증 생략 가능)

** 서류 검토 및 사실 조회 결과에 따라 외국대학 인정기준과 응시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호 해당자 : ①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②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이수증명서**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4개 시험과목에 해당하는 유사 교과목 중 임상 관련 교과목(예방 및 임상동물보건학에 속하는 과목)을 10학점 이상 포함하여 총 20학점 이상

** 특례대상자는 실습교육에 대한 이수증명서는 2024.2.24.(토) 24:00까지 발급받아야 함. 이후 이수증명서 발급 불가능 (이수증명서 발급을 위해 특례대상자는 동영상강의 시청 완료 및 동물병원 현장교육확인증을 2024.2.23.(금)까지 '특례대상자 교육 관리시스템(www.vt-edu.or.kr)'에 업로드 해야 함)

-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호 해당자 : ①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졸업증명서, ② 동물병원 종사증명서(동물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 ③「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

계약서 또는「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확인서, ④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이수증명서

-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호 해당자 : 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② 동물병원 종사증명서(동물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③「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확인서, ④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이수증명서

## 8. 자격증 교부 예정일

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50일 이내에 교부

나. 다만, 「수의사법」 제1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교부

##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 시행 공고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접수기간 이후에는 제출된 응시 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를 취소하거나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응시수수료(수입인지)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다만,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각 호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가능)

라. 응시자는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한 응시자 입실 시간(09:20)까지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검정색 수성 싸인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독관의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그 다음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기간만료일 이내인 것에 한함),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다만, 사진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마. 신분증과 응시표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것과 동일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감독관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바. OMR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검정색 수성 싸인펜 만을 사용해야 하며, 다른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OMR 답안지의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OMR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한 경우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수정테이프가 아닌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를 사용하거나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아. OMR 답안지에 성명, 응시번호, 과목명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자.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스마트워치, 전자사전, 카메라 펜 등 모든 전자기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차.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은 가능하나, 본인 확인과 답안작성 등 시험 진행을 위해 화장실 사용 시간대 및 횟수를 제한합니다. 화장실 사용은 시험 중 2회에 한해 가능하며, 사용 가능 시간은 시험 시작 20분 후부터 시험종료 10분 전까지입니다.

○ 화장실은 지정된 화장실(감독관 지정)만 사용 가능하며, 이동 및 대기, 소지품 검색 등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고, 이를 포함한 모든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므로 시험시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실 사용시간 이외 시간에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2회를 초과하여 화장실 사용 시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카.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개인용 시계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단, 계산기능이 있는 다기능 시계 또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시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시계 기능만 있는 디지털 시계의 사용은 가능하나, 알람 등은 사용 금지

타. 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멀티펜 등 필기구로 인한 똑딱소리, 반복적인 헛기침) 등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파. 시험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와 문제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 「수의사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하며,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그 후 두 번까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거.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그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너. 본 시험 시행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시험 시행 일주일 이전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www.vt-exam.or.kr)에 공고합니다.

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0. 코로나-19관련 감염 예방 관련 응시자 협조사항

* 기본지침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시험 방역관리 안내에 따릅니다.

가. (시험장 입장) 확진자는 일반시험실에서 응시하며 09:2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나. (손소독제 사용) 시험장 입장, 화장실 이용 등 시험실 출입 시 마다 반드시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하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마스크 착용) 시험실은 3밀 환경(밀접, 밀집, 밀폐)이므로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며, 응시자간 접촉 및 대화는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진자인 경우에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라. (창문개방) 시험장의 환기를 위해 시험 전·후(경우에 따라 시험 중 개방) 창문을 개방할 수 있으니 추위에 대비할 수 있는 겉옷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 (에티켓 준수) 시험장 내에서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의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11. 첨부 서식

가. 동물보건사자격시험 응시원서

나. 동물병원 종사증명서

다. 동물병원 현장교육 확인증

라.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이수증명서

마.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 인정기준

바. 법률 제16549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호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4개 시험과목에 해당하는 유사교과목(안)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 동물보건사자격시험 응시원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 | | | |
|---|---|---|---|
| 응시자 | 응시번호 | 성명 | 사진<br>(3.5cm X 4.5cm) |
| | 휴대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
| | 국적(외국인의 경우 기재) | 성별<br>[ ] 남 [ ] 여 | |
| | 전자우편주소 | | |
| | 등록기준지 | | |
| | 주소 | | |
| | 최종학교명 | 학과(전공) | |
| | 졸업여부<br>[ ] 졸업 [ ] 졸업예정 | 졸업(예정)일 | |

| | | | |
|---|---|---|---|
| 응시대상 구분 | 기본대상자<br>「수의사법」 제16조의2 | 가[ ], 나[ ], 다[ ]<br>※ 뒤쪽의 응시원서 작성방법 7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 특례대상자<br>(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대상자) | 가[ ], 나[ ], 다[ ]<br>※ 뒤쪽의 응시원서 작성방법 8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 | 실습교육 이수 | 실습기관 |
| | | | 실습기간 |
| | | | 총 실습시간 |

「수의사법」 제1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보건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년도 동물보건사자격시험 응시표

| | | |
|---|---|---|
| 응시번호 | 성명 | 사진<br>(3.5cm X4.5cm) |
| | 주민등록번호 | |

## 응시원서 작성방법

1. 응시원서에 거짓으로 또는 잘못 기재하거나 표기하는 경우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합니다.
3.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사진란에는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5㎝ x 세로 4.5㎝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을 붙입니다.
4. 국적란은 외국인만 적습니다.
5. 등록기준지란에는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등록기준지를 적고, 주소란에는 현재 거주지를 적습니다.
6. 최종학교명란에는,
   가. 국내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동물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그 대학 및 전문대학의 명칭을 적습니다.
   나.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경우 그 기관명을 적습니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는 마지막으로 졸업한 학교명을 적습니다.
7. 「수의사법」 제16조의2에 해당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은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8.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에 해당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은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이와 동등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합니다)
   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합니다)
9. 실습교육 이수란은 특례대상자만 적습니다. 실습교육의 실습기관란에는 「수의사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10. 부정한 방법으로 수의사법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11.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12.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 미비한 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반환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중 어느 하나를 말합니다)을 지참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시험장에서는 답안지 작성에 필요한 필기구 외에 이동전화, 소형무전기, 무선기능 전자시계,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등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습니다.
3. 시험답안카드(OMR)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해야 합니다.
4.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자 주의사항 또는 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즉시 퇴장을 명하고,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5. 「수의사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하며,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그 후 두 번까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10㎜×297㎜[백상지(80g/㎡)]

# 동물병원 종사증명서

| | | | | |
|---|---|---|---|---|
| 종사자 인적사항 | 성명 | | 생년월일 | |
| | 주소 | | | |
| 종사 실적 | 종사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종사 실적 | 월 일 | | |
| 종사 병원 | 동물병원명 | | | |
| | 주소 | | | |
| | 대표자 성명 | | 전화번호 | |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에서 동물간호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동물병원장 직인

| | |
|---|---|
| 첨부서류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유의사항**

종사기간이 비연속적이거나 여러 번 나누어서 종사한 경우에는 '종사 기간' 기재란에 나누어 기재하고, 종사한 동물병원이 여러 곳일 경우에는 동물병원별로 1매씩 작성합니다.

# 동물병원 현장교육 확인증

| | | | | |
|---|---|---|---|---|
| 이수자 인적사항 | 성명 | | 생년월일 | |
| | 주소 | | | |
| 이수 실적 | 이수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이수 시간 | 시간 | | |
| 현장교육 동물병원 | 동물병원명 (대표자) | 동물병원명:<br>대표자: | | |
| | 주소 | | | |
| | 이메일 | | | |
| | 교육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동물병원:<br>휴대폰: |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1호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현장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동물병원장 직인

제 호

#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이수증명서

| | | | | |
|---|---|---|---|---|
| 인적사항 | 성명 | | | |
| | 주소 | | | |
| | 생년월일 | | 연락처<br>(휴대전화번호) | |
| 학교<br>(교육기관) | 학교(교육기관)명 | | | |
| | 양성기관<br>평가인증 | 인증번호 | 제 호 (인증일: ) | |
| 이수실적 | 이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이수시간 | 총 시간(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간,<br>동물병원 실습 시간) | | |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1호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특례대상자 실습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학교(교육기관)장 직인

#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 인정기준

□ 일반 인정기준

| 인정분야 | 세부내용 |
|---|---|
| 1. 해당 외국의 제도 | (1-1) 외국 학력자에 대한 자국 면허(자격)시험 자격을 부여할 것<br>(1-2) 국적에 따른 면허(자격)시험 및 취업을 차별하지 않을 것 |
| 2. 학사운영 | (2-1) 국내대학 대비 수업연한이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br>(2-2) 국내대학 대비 최소 졸업학점에 차이가 없을 것<br>(2-3) 국내대학 대비 교과목별 수업시간에 차이가 없을 것 |
| 3. 학사관리 | (3-1) 외국인의 (편)입학 절차와 허용 인원 수가 학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준수하고 있을 것<br>(3-2)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과정(특별반)이 없으며, 외국인도 현지 언어로 현지인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할 것 |
| 4. 신청자 개인 | (4-1) 유학비자를 발급 받는 등 합법적 입학·편입학 과정을 거칠 것<br>(4-2) 전체 수학한 학기(년)가 해당 학위를 받는데 적절할 것<br>(4-3) 이수한 교과목이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은 모두 이수할 것<br>(4-4) 해당 대학을 졸업하고 적합한 학위를 취득할 것<br>(4-5) 해당 면허(자격)를 취득할 것(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을 제한하는 단서가 없는 면허 또는 자격) |

□ 교육과정 인정기준

| 최소 수업연한 | 필수전공 교과목 및 최소 이수학점 | 최소 실습학점 |
|---|---|---|
| 2년제 대학 | ① 필수전공 교과목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제2항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br>* 1. 기초 동물보건학, 2. 예방 동물보건학, 3. 임상 동물보건학, 4.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br>② 최소 이수학점 : 40학점*<br>* 졸업 최소 이수학점은 72학점 | 18학점 |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유사 교과목

| 과목 | 교과목 | 교과목별 인정 교육과정(345개) |
|---|---|---|
| 기초동물보건학 | 동물해부생리학 (21개) | 동물생리학, 동물해부학및실습, 동물해부생리및실습, 동물해부생리, 동물기본해부학및실습, 동물해부생리학실습, 동물해부학, 해부생리학, 동물생리학실습, 동물해부생리학, 동물비교해부학, 반려동물해부생리(기초,심화), 애완동물해부생리질병학, 동물병태생리학, 생리학, 동물기본해부학, 동물생리학및실습, 동물해부생리학미실습, 반려동물해부생리학, 수의생리학및실습, 수의해부학및실습 |
| | 동물질병학 (15개) | 동물질병학, 애완동물질병학, 동물질병, 동물질병의이해, 애견질병및건강관리, 반려동물질병학, 기본동물질병학, 동물질병학실습, 특수동물영양및질병관리, 동물질병치료, 동물질병관리, 애완동물질병관리, 동물질병실무, 수의진단간호, 애완동물실습 |
| | 동물공중보건학 (21개) | 동물공중보건학, 공중보건실무, 공중위생, 애완동물위생, 수의공중보건학및영양학, 공중보건학, 공중보건위생학및실습, 동물공중위생, 수의공중보건학및역학실습, 동물공중위생학, 동물위생및질병, 반려동물관리위생학, 수의공중보건학, 공중위생학, 인수공통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학특론, 반려동물공중보건, 반려동물위생관리, 공중보건및법률, 반려동물공중위생학, 수의공중보건학및실습 |
| | 반려동물학 (37개) | 반려동물학, 애완동물표준학, 고양이관리학, 반려동물관리이론, 애견의표준학, 애완동물관리학개론, 애완동물및사양관리, 애견품종학, 애완동물학개론, 애완동물개론, 애견동물, 애묘학개론및건강관리, 애완동물학, 고양이학, 애견표준학, 애완동물사양관리, 동물사육, 애견표준학및행동심리학, 반려동물생명과학, 견종학, 애완동물관리학, 동물사양학및실습, 애완동물학입문, 반려동물기초, 반려동물사양및실습, 반려동물관리학, 애완동물사양관리및실습, 애완동물관리, 애완동물총론, 동물사양관리실습, 애완동물, 동물사양관리실무, 애완동물사육, 동물사양관리학, 애완동물사양학, 동물관리학실습, 애완동물관리학및실습 |
| | 동물보건행동학 (71개) | 동물보건행동학, 견훈련기초및실습, 애견훈련기초, 동물생리및행동학, 동물행동교정, 애견훈련, 동물행동및매개치료학, 반려동물훈련학및실습, 동물행동학, 반려동물훈련실습, 애완동물행동학과행동교정, 애견훈련실무, 동물행동교정학, 애견훈련기초실습, 동물행동및야생동물학, 반려동물행동교정실습, 반려견훈련학및실습, 애견행동심리, 동물행동심리학, 반려견훈련기초및실습, 애견훈련학및실습, 동물행동심리, 반려견행동교정학및실습, 동물행동상담학, 애견행동교정, 반려견행동심리학및실습, 동물행동교정학및실습, 기본훈련학, 견훈련기초, 반려동물행동분석학, 기초동물훈련, 애견훈련중급실습, 가정견훈련학, 반려동물행동교정, 응용동물훈련, 애견훈련고급실습, 애견학및훈련실습, 애견기초훈련, 애완동물연습, 애견훈련실습, 애견중급훈련, 동물훈련학, 애견고급훈련, 애완동물훈련실습, 동물훈련, 동물훈련실습, 기초동물훈련및실습, 고급동물훈련및실습, 동물행동과훈련, 애완동물행동심리, 견체표준및훈련, 애견훈련응용, 동물기초실습, 동물행동상담실습, 동물행동치료학, 동물훈련및실습, 동반견훈련, 반려견기초훈련, 반려견응용훈련, 반려견행동교정교육, 반려견훈련학, 반려동물심리행동학및실습, 반려동물행동학과행동교정, 반려동물훈련학, 애견기초교육, 어질리티, 자가견기초교육, 트레이닝이론과실습, 트레이닝이론및실습, 특수견훈련, 특수목적견훈련 |
| | 동물보건영양학 (17개) | 동물보건영양학, 동물영양사양관리학및실습, 동물영양사료학, 동물사료영양학및실습, 기초동물영양학및실험, 동물사료영양학, 기본동물영양학, 애완동물영양, 기능성사료및영양, 애완동물영양학, 동물영양학, 애견영양및사료학, 반려동물영양, 동물영양학및실습, 사료영양학, 영양생리학, 영양학 |

| | | |
|---|---|---|
| 예방동물보건학 | 동물보건응급간호학 (5개) | 동물보건응급간호학, 응급수의간호및실습, 응급동물간호, 응급동물수의간호, 응급동물보건 |
| | 동물병원실무 (18개) | 동물병원실무, 동물병원실습, 동물병원관리실무, 동물병원원무관리, 수의테크니션실무및취업지도, 동물병원원무행정(실무), 펫샵·동물병원실무, 원무관리, 고객관리서비스실무, 수의테크니션실무, 원무관리와보호자교육, 동물병원원무, 원무행정및동물의약품관리, 동물병원코디네이터(기초,실무), 동물간호사실무, 동물병원원무학, 동물병원원무행정관리, 동물병원현장실무 |
| | 의약품관리학 (12개) | 동물약리학, 동물약품, 동물약품기초, 수의약무기초, 수의약리학, 반려동물보건약리, 동물용의약품약전해설, 동물용의약품품질관리, 의약품관리학, 동물약리독성학, 수의약리학및실습, 수의임상약리학 |
| | 동물보건영상학 (17개) | 동물보건영상학, 동물방사선이론과실습, 동물방사선실습, 동물방사선, 수의방사선, 영상검사실무, 동물방사선학, 동물영상진단학및실습, 수의방사선학, 수의영상진단간호, 동물영상진단학, 영상진단학개론, 반려동물보건영상진단, 수의방사선과학및실습, 수의영상의학병원실습, 수의진단영상학및실습, 방사선이론과실습 |
| 임상동물보건학 | 동물보건내과학 (50개) | 동물보건내과학, 수의간호기초, 수의내과간호, 동물간호복지실무, 동물간호학및실습, 소동물간호학및실습, 동물내과간호학, 동물간호내과실습, 동물간호/치료, 동물간호, 동물내과간호, 동물간호및실습, 동물내과간호학및병원실무, 동물간호기술, 동물간호실습, 외래동물수의간호, 반려동물보건내과(기초,심화), 동물간호복지학및실습, 동물간호및보정, 동물내과임상병리간호, 동물간호실습기초, 수의내과, 반려동물간호학, 동물병원간호실무실습, 동물질병간호학, 동물간호학, 동물내과간호실습, 소동물기초의학, 동물간호기초, 응용동물간호학, 기초동물간호학, 동물간호기초및실습, 동물간호학개론, 동물기초의학, 동물임상간호학, 입원동물수의간호, 동물간호실무, 동물보건학개론, 동물보건사실무, 반려동물보건(기초,심화), 입원동물보건, 동물간호학각론및실습, 동물기초간호, 동물기초간호학, 동물내과간호학및실습, 소동물내과학및실습, 소동물내과학병원실습, 수의간호학, 수의간호학개론, 애견간호학 |
| | 동물보건외과학 (20개) | 동물보건외과학, 동물재활및물리치료, 동물외과간호, 동물재활&물리치료, 수의외과, 동물외과간호학, 동물수술간호실습, 동물외과간호실습, 반려동물보건외과(기초,심화), 동물간호외과실습, 수의외과수술간호, 수술동물보건, 수의외과간호, 수술동물수의간호, 동물외과영상진단간호, 동물외과간호학및실습, 동물외과방사선학및실습, 소동물일반외과학병원실습, 소동물정형신경외과학병원실습, 수의외과학및실습 |
| | 동물보건임상병리학 (26개) | 동물보건임상병리학, 동물임상병리실습, 임상화학및실험, 동물임상병리학및실험, 반려동물임상병리학, 임상병리학및방사선학실습, 수의임상병리진단간호, 동물임상병리학및실습, 임상병리검사, 동물임상병리, 임상병리학및약리약제학실습, 수의임상병리진단보조, 기생충학및실습, 반려동물임상병리, 기생충학및실험, 동물임상병리및방사선학, 반려동물임상병리진단, 응용동물임상병리및실습, 임상검사실무, 동물임상병리학, 임상기생충, 동물임상병리기초, 동물임상병리및실습, 수의임상병리학, 수의임상병리학및실습, 수의임상병리학병원실습 |
|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15개) | | 동물보건복지및법규, 동물복지학, 동물법규세미나, 동물복지윤리, 동물복지및관계법규, 애완동물관련법규, 동물복지및법규, 공중보건학및법규, 동물보건학및법규, 동물생명윤리, 동물공중보건및법규, 동물법규, 반려동물복지및보건법규, 동물수의축산법규, 수의사법규 |

※ 기타 유사 교과목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에 별도 평가반을 구성하여 최종 확정 후, 동물보건사 자격증 발급에 적용할 계획